

공

고

◎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4-3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8일

대구 전 파 관 리 소 장

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

성 명	허가번호	주 소	위반내용	처분내용
김○옥	42-2019-60-0000025	울진군 기성면	무선국 정기검사불응 (2차위반)	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(2024.1.29.~2024.3.28.)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, 제25조(무선국의 운용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처분일자: 2024. 1. 29.

4. 참고사항

가.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,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나.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3-749-2833, 팩스053-749-282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